

신용계특약

제1조(급부자의 결정) 계급부자는 매회 급부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그 회회 급부자를 결정한다.

제2조(계급의 납입 및 장소) 상호저축은행의 수금원이 직접 계급을 수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수금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다.

제3조(계급납입의 지연) 매회 계급을 기일내에 납입치 못하였을 때에는 영업점에 게시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4조(급부금의 지급) 급부 결정자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또는 담보를제공하게 한 후 지체없이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급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해당회차 급부 이익 해당액을 차회 납입할 계급에서 차감한다.

제5조(급부후 계급납입) 급부를 받은 후에는 급부금에 대한 이자를 계급과 함께 납입한다.

제6조(급부후 중도해지) 급부후 해지를 할 때에는 급부금 총액에서 기납입한 계급원금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일시 납입한다.

제7조(상호저축은행의 해지결정) 거래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이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상호저축은행의 승인없이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양도한 때
3. 계급 불입의 지체가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그 불입의 가능성이 의심될 때

제8조(비용부담) 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비용 또는 담보물건의 조사, 취득관리비 및 화재보험료는 거래자의 부담으로 한다.